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모집 관련 보험감독 체계 정비

□ 금융위는 지난 30일 발표한 보험업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안)을 통해 보험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전업카드사의 보험모집 기준을 강화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주요 규제를 입법예고함.

o 현재 전업카드사들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자사의 DB를 활용하여 보험을 판매한 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하면서도 관련 규제는 대부분 받지 않고 있음.

o 이 같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5개 전업카드사들을 중심으로 판매경쟁은 과열되고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완전판매 및 이로 인한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음.

□ 개정(안)에 따르면 5개 전업카드사는 앞으로 점포 내 모집과 인터넷 모집만 가능해지며, 꺾기 등 불공정 모집 금지, 보험사별 판매비중 한도 규제, 모집방법 제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받게 됨.

o 한편, 판매비중 규제는 현재 카드사 산하의 각 보험대리점이 사실상 한 보험사하고만 전속계약을 맺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만큼 3년 유예 후 적용(3년째 비율 50% 적용)하기로 함.

o 모집방법에 있어서도 현행 카드사의 영업행태인 텔레마케팅(TM)을 인정하며, 판매상품 제한 및 모집인수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예외 적용하기로 함.

□ 아울러 금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보험대리점 검사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유관기관간 업무 분담을 통해 검사기능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임.

o 소형 보험사에 대한 검사는 보험협회 등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검사 기능을 효율화하고, 업계 자체의 자율조정 기능도 존중해 주기로 함.

(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,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, 10/30)